

#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9
----------	----

제출연월일 : 2007. 2. 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성장잠재력이 풍부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 나.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문화산업의 추진과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등 문화산업클러스터 추진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
- 다.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법인격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장비 및 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다. 정관의 기재사항과 변경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 라.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할 사업을 명시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법」, 「지방재정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지방공무원법」
- 나. 예산조치 :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2억원), 추가비용 1회 추경 반영예정
- 다. 합 의 : 예산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6. 12. 9 ~ 12. 28 / 접수의견 없음

##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문화산업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안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출연 등) 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장비 및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시의 재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진흥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기획·조정에 관한 사업
2. 문화산업의 기반조성, 시책개발, 홍보활동 및 정부사업 유치에 관한 사업
3.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와 기술지원 협약 및 공동사업 개발에 관한 사업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연구수행 및 각종 자료 수집 등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의 지원시설 등 관련 산업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6.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7.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8. 대전영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진흥원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시장은 1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법인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진흥원의 설립비용은 대전광역시와 이를 부담한다.

□ 민 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출자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특수전문분야의 일반직공무원·대학교수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전문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 제30조의4(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②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④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